

창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30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사천시

피고, 항소인 1. A

2. B

3. E

4. F

5. G

변론 종결 2015. 7. 16.

판결 선고 2015. 8. 20.

제 1 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23. 선고 2012가단3016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사천시 M 수도용지 295㎡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D, C(이하 'D, C'이라 한다)에게, 피고 A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8. 5. 2. 접수 제1395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피고 B은 1/2 지분, 피고 E은 3/14 지분, 피고 F, G은 각 2/14 지분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1. 6. 14. 접수 제152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B은 1/2 지분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3. 8. 30. 접수 제22924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9, 13행의 '피고U'을 '피고 B'으로,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D, C'을 'D, C'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망 H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H의 상속인들인 D, C을 대위하여 피고A, B, 망 R의 상속인들인 피고 E, F, G을 상대로 각 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원고는 2010. 10. 1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전거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전까지 그 지하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을 사용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망 H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3년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D, C에 대하여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2) 판단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본다. 원고는 1981년경 망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삼천포시 상수도 확장 및 공업용수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과 공업용수관을 매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민법 제212조) 점유권역시 이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상수도 등을 매설함으로써 그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상수도 등을 매설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을가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고A는 망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V의 증언,

당심 증인 W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A가 망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명재권, 판사 조형우, 판사 김지영